

제 안 요 청 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25. 12.

산 업 통 상 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1. 과업개요

- 과 제 명 :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소요예산 : 금90,000,000원정(일금구천만원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12개월
 -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추진배경
 - 예비타당성 본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본평가 대응 필요
 -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제조·DX 혁신모델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필요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주요 과제내용

- ① 경제·정책·지역균형발전 등 예비타당성 본평가 타당성항목 심사 대응
- ②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인프라 컨셉 구성 및 기본설계 연구
- ③ 제조·DX혁신모델 설계를 통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3. 과업 수행 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은 연구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산업통상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산업통상부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에서 용역 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 착수보고

- 용역 수행자는 수요기관 요청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 일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용역 수행자는 수요기관 요청시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 보고서와는 별도로 연구 결과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는 용역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보완·정리된 사항을 제출(A4 인쇄본 3부, USB파일)해야 하며, 본 연구 결과의 보존과 확산·활용의 관점에서 연구과정에서 입수·조사된 내용을 첨부하여 인쇄·제출해야 함

5. 과업 추진 일정

번호	세부 연구 내용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착수보고 및 자료조사												
2	과업 연구 및 수행												
3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사업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 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종합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 능력 평가 (80)	기술·지식능력(3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10
	사업수행계획(3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연구방식의 타당성(1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 연구방법의 타당성		
	재무구조·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가격 평가 (20)	제안가격(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산출

5.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6.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등록

-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에 따른 서류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공고서 참조

2. 제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산업통상부에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증빙)서 1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 1호)
- 제안서 1부(별지서식 2호)
-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 산출 근거표 각 1부(별지서식 3호)
 - *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 밀봉
-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별지서식 4호 및 별지서식 5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와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른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별지서식 6호)
 -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2024년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서식 7호)
- 공동계약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2)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에 의합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IV

일반 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통상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필요 시 산업통상부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고문 및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공고문 및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부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과업 관련 문의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노윤길 사무관
 - (연락처) 044-203-4634
 - (E-mail) shdbsr1f@korea.kr

[별지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 . . .
	입찰건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감증명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p>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총괄책임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기관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산업통상부장관 귀하</p>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연구기간

[별지서식 3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금 액</th><th>비 고</th></tr></thead><tbody><tr><td>수 행 용 역 비</td><td></td><td>부가세 포함</td></tr><tr><td>기타 재료비 등</td><td></td><td>부가세 포함</td></tr><tr><td>합 계</td><td></td><td>부가세 포함</td></tr><tr><td>제 안 금 액</td><td></td><td>부가세 포함</td></tr></tbody></table>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3-1호]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2. 경비 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자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보안각서

본인은 202 년 00월 00일 귀 기관에서 발주한 『과제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 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 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 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부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과제명」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업통상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산업통상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